

의안번호	2205134
의 퇴 인	안상훈 의원
회 답 일	2025.1.13.
추계번호	24C4804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7억 6,600만원(연평균 13억 5,300만원)으로 추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150	—	—	—	—	150	30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60	60	60	60	60	300	60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안 제7조)	18	18	18	18	18	90	18
사회적 영향평가(안 제8조)	237	237	237	237	237	1,185	237
실태조사(안 제33조)	240	240	240	240	240	1,200	240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 (안 제35조)	738	753	768	783	799	3,841	768
합 계	1,443	1,308	1,323	1,338	1,354	6,766	1,353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5년마다 디지털헬스케어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디지털헬스케어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둠	의무규정
4	안 제8조(사회적 영향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이 사회·경제·문화와 국민의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평가(이하 “사회적 영향평가”라 한다)하고 공표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9조(보건의료 정보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 증진 등 공익적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의료정보를 수집, 처리, 생성, 연계, 분석, 제공하는 사업(이하 “보건의료 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0조(보건의료 정보 통합활용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보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플랫폼(이하 “보건의료 정보 통합활용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4조(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정보를 가명처리하려는 자는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8	안 제18조(보건의료 정보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전송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전송요구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9조(신규 헬스케어서비스등의 시범사업의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규 헬스케어 서비스등의 활용·보급·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신규 헬스케어서비스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27조(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화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8조(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의 수집·생성·교류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을 설립함	의무규정
12	안 제30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 의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활동과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여야 함	의무규정
13	안 제31조(수출지원)	국가는 헬스케어서비스등을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우수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2조(전문인력양성)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요구되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5	안 제33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34조(국제협력)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의무규정
17	안 제35조(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진흥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헬스케어 정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18	안 제39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3	안 제7조(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심의위원회)	○	
4	안 제8조(사회적 영향평가)	○	
5	안 제9조(보건의료정보사업)	X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기반구축 및 융합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정보 정책 분야 기반구축 및 고도화,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 등 여러 의료정보 관련 사업을 실시 하고 있음(2024년 예산 5억 8,000만원)
6	안 제10조(보건의료정보 통합 활용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	X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2024년 예산 27억 1,700만원)
7	안 제14조(기관 보건의료정보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18조(보건의료정보전송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X	
9	안 제19조(신규 헬스케어서비스 등의 시범사업의 실시)	X	
10	안 제27조(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의 표준화 등)	X	
11	안 제28조(한국보건의료정보원)	X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19년에 설립되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를 창출하는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2024년 예산 64억 4,700만원)
12	안 제30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3	안 제31조(수출지원)	X	
14	안 제32조(전문인력 양성)	X	
15	안 제33조(실태조사)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6	안 제34조(국제협력)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7	안 제35조(디지털헬스케어정책 지원센터의 지정·운영)	○	○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8	안 제39조(권한의 위탁)	X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하여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부 조문들은 현재 유사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정부가 추진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 규모 등을 추정하기가 곤란하여 본 추계에서 제외
 - (안 제14조) 가명처리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해당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업무의 내용 및 필요 인력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8조) 해당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의 규모 및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데 곤란
 - (안 제19조) 시범사업에 대한 사항 등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세부 사업,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등의 내용 및 사업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27조)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연구용역비 또는 자문료 등 표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표준을 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채택할 방식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 구체적인 사항 등을 알기가 어려움
 - (안 제30조) 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 연구개발의 촉진 사업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없음
 - (안 제31조)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등을 해외에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자를 지원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의 수와 지원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3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기관 수와 지원내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34조)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할 구체적인 국제협력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안 제39조) 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관련 업무 위탁 여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비용의 범위 등을 알 수 없음
- 본 추계에서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조문(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33조·제35조)에 대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은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 사례를 준용하여 2026년 1억 5,000만원으로 추계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2023~2027)’ 수립을 위하여 2022년에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 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 첫 해인 2026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2]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150	-	-	-	-	150	30

□ (안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총 3억원으로 추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였는데,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 제정안에서는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60	60	60	60	60	300	60

□ (안 제7조)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사례를 준용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으로 추계

-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회의 개최에 따른 회의수당만 소요된다고 가정
 - (회의수당 지급 대상자 수) 제정안은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를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는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14명의 위원이 회의수당 지급 대상인 민간위원 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수를 14명으로 가정
 - (회의수당 단가)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적용하였고, 추계기간 동안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회의 개최 횟수) 회의 횟수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준용하여 연 5회 대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 (안 제7조)	18	18	18	18	18	90	18

□ (안 제8조) 제정안에 따라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영향평가’ 사례를 준용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1억 8,500만원으로 추계

-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회적 영향평가는 유사사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영향평가’ 정책연구비(2022년 기준 2억 3,700만원)를 준용
-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2억 3,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5] 디지털 헬스케어의 사회적 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사회적 영향평가(안 제8조)	237	237	237	237	237	1,185	237

□ (안 제33조) 매년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바이오헬스 실태조사’ 사례를 준용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2억원으로 추계

-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는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 ‘바이오헬스 실태조사’의 정책연구비(2022년 기준 2억 4,000만원)를 준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2억 4,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표 6] 실태조사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33조)	240	240	240	240	240	1,200	240

- (안 제35조)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사례를 준용하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8억 4,100만원으로 추계
-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2024년 기준 7억 3,800만원)을 준용하여 추계
 - 추계기간 첫 해에는 7억 3,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후에는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024.12.)를 적용하여 추계

[표 7]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의 지정·운영(안 제35조)	738	753	768	783	799	3,841	768

4.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67억 6,600만원(연평균 13억 5,300만원)으로 추계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150	—	—	—	—	150	30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60	60	60	60	60	300	60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심의위원회(안 제7조)	18	18	18	18	18	90	18
사회적 영향평가(안 제8조)	237	237	237	237	237	1,185	237
실태조사(안 제33조)	240	240	240	240	240	1,200	240
디지털헬스케어정책지원센터(안 제35조)	738	753	768	783	799	3,841	768
합 계	1,443	1,308	1,323	1,338	1,354	6,766	1,353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assembly.go.kr